

○ 의안제출

1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- 개정 이유  
구직제 개편으로 증원되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추가 신설하기 위한 것임.
- 주요 내용
  - 9급상당으로 되어있는 공과금요원중 8급상당 임용 자격기준을 추가함.(별표 1, 제6호)
  - 구내식당 급식관리 영양사를 별정직 8급상당으로 임용할수 있는 자격 기준을 신설함.(별표 1, 제8호)
  -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광고물관리원을 별정직 7급상당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함(별표 1, 제9호)
- 개정조례안 ( 13면에 실음 )

2. 서울특별시영등포구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(안)

- 제안 이유
  - 1967년이전 구획정리 사업시 하천부지로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되고, 79년 10월 영등포구와 구로구 분구시 도림동이 신도림동으로 변경시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으로
  - 행정동은 문래 1,2동장의 관할이나, 일부주민의 거주하는 도림동 430-2호는 주민들 임의로 문래동 1가 87번지로 주민등록을 신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
  - 이지역 주민들이 문래동 지번으로 변경 조정해 줄것을 요구한바,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
- 주요골자
  - 문래동과 도림동사이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로를 기준으로하여 철로 이북지역을 문래동 1, 2, 4, 5, 6가에 각각 편입
- 변경내역

변 경 전 (도 립 동)				변 경 후 (문 래 동 1 가)							
지	번	지	목	면	적 m <sup>2</sup>	지	번	지	목	면	적 m <sup>2</sup>
440		도	로	985		98		도	로	985	
443		〃		26		99		〃		26	
444		〃		1,369		100		〃		1,369	
445		〃		149		101		〃		149	
739		〃		225		102		〃		225	
740		〃		93		103		〃		93	
741		제	방	350		104		제	방	350	
742		〃		149		105		〃		149	
432			답	17		106			답	17	
741-1		도	로	33		107		도	로	33	
429-4		〃		21		108		〃		21	
430-1		제	방	463		109		제	방	463	